

금속노조 “규약·재정 정비, 원하청 투쟁 결의”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조직 민주성·재정 투명성 확보... 대원청 투쟁 방향 확정

금속노조가 규약·규정 개정, 조합비와 기금 운영 방침, 결의문 채택 등 핵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대의원들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재정 투명성 확보, 현장발의안 처리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29일 오후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42명 중 435명이 참석해 성원 요건을 충족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조가 살아있어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도, 일터의 민주주의도,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며 “오늘 대의원대회를 힘있게 사수하고 규약·재정 정비와 투쟁 결의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지부 임원 3회 연임 제한 그대로

이번 대대는 회순 변경으로 현장발의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현장발의안은 지난 9월 16일 열린 154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다시 손보자는 취지였다. 당시 중앙위는 「선거관리규정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을 개정해, 기존의 “조합 임원이 2회 연임하고 지부 임원이 3회 연임한 뒤에는 연속



출마할 수 없다”는 제한을 완화하여, 조합 임원의 연속 출마만 제한하였다.

현장발의안은 이 개정이 금속노조의 정체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흐드는 것이라며, 다시 지부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삼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창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연임제한 규정은 임원의 관료화를 막는 장치였다. 일부 지부에서 임원 출마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임제한을 폐지하면 ‘직업적 지부 임원’이 고착화되어 오히려 새로운 간부 배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14기 선거를 앞두고 연임제한을 완화한 것은 조합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토론과 표결을 거쳐 재적 대의원 428명 중 271명이 찬성(63.3%)해 통과됐다.

대의원 기준 변경 부결, 조합 임원 징계 신설

규약·규정 개정 안건은 금속노조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번 대대에서는 ▲지부별 조합원 수에 따른 대의원 배정 기준 조정 ▲임원 징계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됐다.

지부별 대의원 배정 기준 조정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른 대의원 배분 방식을 조정해 대표성을 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재석 442명 중 145명(32.8%)만 찬성해 부결됐다.

임원 징계 규정 마련은 조합 임원 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한 징계 절차를 규약에 신설하자는 안건은 재석 442명 중 301명(68.1%)이 찬성해 가결됐다.

재정 관련 안건은 조합비와 각종 기금의 납부, 교부, 배분, 사용 방식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지부, 지회 교부금 부족을 해결하고자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별로 운영기준이 제각각이었던 부분을 정리해, 금속노조와 지부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

정을 집행하도록 했다. 특히 기금 사용내역을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 안건은 재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문은 “개정 노조법 이후 원하청 공동투쟁은 자본의 갈라치기와 악선동을 깨뜨리고, 더 큰 단결력으로 자본본을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 이라 내용을 담았다. 현장에서 ‘특수고용직’ 문구를 포함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플랫폼·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함께 내걸었다. 이어 “사업장을 넘어서는 하나의 요구로 원청에 맞서 금속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는 말로 결의문을 끝맺었다.

금속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과 재정을 정비하고, 투쟁 의제와 교섭 요구를 확정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민주적 운영 원칙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하청 경계를 넘는 투쟁과 교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방산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촉구 ‘3보 1배’ … 현재에 1만 명 탄원서 제출

금속노조와 방위산업체 사업장 노동자들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3보 1배’ 투쟁을 벌이며 노조법 41조 2항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한화오션지회, 부산양산지부 등 금속노조 방산사업장 조합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부터 3보 1배로 이동해 헌법재판소에 총 1만 17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법 제41조 2항은 방산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 조합원들은 “방산사업장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며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사측은 불법과 업으로 내몰고, 간부·조합원은 고소·손배가 압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단체행동권 보장을 호소했다.